• 소통의 연수 • 통합의 연수 • 안전한 연수

연수구보

■구정방향■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우)21967 ☎ 749-7392 / FAX 749-739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 관 의 장

부록 제1349호 2022. 12. 15.(목)

【조 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465호(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 1

【공 고】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1803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7

회람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 연수구의회 소속 의원들의 정책개발 역량을 높이고 입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의원연구단체’를 운영중에 있으며,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연구활동계획서’를 접수 중에 있음. ○ ‘의원연구단체’의 운영과 관련한 제안사항들을 조례상에 반영하고 일부 모호한 문구 및 개정에 필요한 사랑들을 전부개정을 통해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연구단체 구성 및 등록, 연구활동 범위에 관한 사항(제3조 ~ 제5조) ○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제6조, 제7조) ○ 연구활동계획서 제출 및 변경, 정산서 제출 사항 (제8조, 제11조) ○ 연구활동비 지원 및 정책연구용역비 지원 사항 (제9조, 제10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2. 12. 15.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465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의 정책개발 역량 제고 및 자치입법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연구단체”란 특정분야에 관한 자치입법 활동 및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의원연구단체에서 입법 및 정책개발 등의 연구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써 의정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비”란 의원연구단체가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경비로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의원연구단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자율적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한다.

② 의원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의원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의원(이하 “대표자”라 한다)을 둔다.

③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연구활동 범위) ①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동 분야의 정책개발 연구용역

2. 입법 및 정책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현장조사 등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②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심도 있는 연구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분야의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 ①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등을 접수한 경우 제6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이 승인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다.

③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는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변동사항을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정책연구용역의 승인(필요성, 주제·사업비·기간 등 적정성)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의원

2. 연구활동 심의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 4명 이내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의장”으로 본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원인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를 출석시켜 연구활동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담당이 된다.

제8조(연구활동계획서 제출 및 변경) ① 의장은 매년 11월30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접수하고,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접수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 매 연도 12월 30일까지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원연구단체가 이미 승인 받은 연구주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3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연구활동비의 지원) ① 의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의원연구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은 연간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②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계획서 외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구활동비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급한 연구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정책연구용역비 지원 등)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1조(연구활동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등) ① 의원연구단체는 매 연도 11월 30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연구활동비의 사용내역과 함께 의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제출기한을 5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하며, 승인된 연구결과 보고서는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연구활동 결과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④ 의원연구단체가 제출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저작권은 의회에 귀속된다.

제12조(등록취소)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집행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조제2항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제13조(공동참여)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14조(의원연구단체의 활동기간)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기간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일부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의원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15조(수당) 위촉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등록된 의원연구단체는 이 조례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한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제6조제6항에 따라 연임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1. 단체명칭 :
2. 설립목적 :
3. 의원연구단체 인적사항

소속 상임위원회	성 명	서 명	비 고

년 월 일

의원연구단체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의원연구단체 등록증

등록번호		연수구의회 제○○○○ - 호
등록단체명		
대 표 자		의원
연구주제		
연구활동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활동비	지 원 액	금 원
	지원조건	
비 고		

귀 단체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로 등록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 통보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을 제출합니다.

연 구 단 체 명		
변 동 의 원	당 초	의원
	변 경	의원
변 동 일 자	년 월 일	
변 동 사 유		
기 타		

년 월 일

의원연구단체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연구활동계획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연 구 내 용		주 제	
		목 적	
연구활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별첨)	
연 구 활동비	총 액	금 원(₩ 원)	
	산출내역	(세부내역 별첨)	
기 타			

년 월 일

의원연구단체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연구활동 심사결과 통보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아래 의원연구단체의 ○○년도 ○○연구활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연구단체명		
대 표 자		의 원
연구 주제		
심사결과	내 용	
	결 과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장 (직인)

의원연구단체 대표자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연구주제 변경내용	당초	연구주제	
		연구목적	
	변경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별첨 : 구체적으로 서술)
연구활동비	총 액		금 원
	산출내역		
특기사항			

년 월 일

의원연구단체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정책연구용역 계획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의원연구단체명	
과 제 명	
소요예산	금 원
용역기간	개월 (※ 실제 연구기간)
연구목적 (필요성)	
연구내용 등 세부 연구계획	「붙 임」
연구과제 중복 검 토 결 과	
용역결과 활용계획	

※ 붙임: 연구용역 세부 연구계획서 1부.

년 월 일

제출인: ○○연구단체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래 같이 ○○년도 ○○연구활동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대표자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내용 요약	
비고	

※ 붙임: 연구활동 세부결과보고서

년 월 일

의원연구단체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 귀하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1803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역문화진흥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

❍ 모든 구민이 향유 가능한 연수구 대표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 제도 및 절차 마련

❍ (재)연수문화재단(이하 재단)의 기금 폐지 후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재단 기금 승계를 통한 효율적인 기금운용 도모

3. 주요내용

❍ 연수구민축제 개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규정 보완 (안 제8조)

❍ 원활한 축제 추진을 위한 축제추진위원회 관련 조항 신설 (안 제9~18조)

❍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관련 조항 신설 (안 제4장 제34~48조)

❍ 연수구와 재단 간 직원 상호파견을 위한 조문 정비 (안 제33조)

❍ 예술창작공간 이용대상 확대 및 구민 향유공간 활용을 위한 조항 정비 (안 제50조제2항)

❍ 관련 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맞추어 문구 및 용어 정비 (안 제4조, 안 제8조제2항, 안 제 53조)

❍ 내용의 구체화(안 제20조)

❍ 삭제(현행 제11조제8호, 제11호제11호, 제13~1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 2.(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제출서식

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라. 보내실 곳

- 주소: (21967)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 전화: 032-749-7303, FAX : 032-749-7289
- E-mail : swkj7@korea.kr
- 연수구홈페이지: http://www.yeonsu.go.kr/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붙임1】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현행) : 【붙임2】

【붙임1】「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적 권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문화도시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문화를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생활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문화를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5. “생활문화시설”이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생활문화동호회”란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7. “예술창작공간”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정책 수립 및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구민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역문화의 진흥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1항의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지역 문화예술의 진흥) 구청장은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기반시설의 조성 및 확충

2. 문화예술인·단체 지원 및 육성

3.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4. 문화유산·지역역사·전통문화의 보전 및 활용

5. 국내외 지역문화 교류 활성화

6.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제7조(생활문화 활성화)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구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생활문화동호회 및 단체의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연수구민축제)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고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연수구민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축제를 개최하는 경우 그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축제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행사 결과물, 기상 대비 물품 및 교통수단의 제공

2. 축제에 필요한 출연진 및 운영자 등의 홍보활동, 공동연수행사, 학술행사 및 그 밖의 관련 행사 진행 시 필요한 경비의 제공

③ 구청장은 축제를 개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 고유문화 발전과 구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축제

2. 지역 특성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축제

3. 문화(전통문화를 포함한다)예술 관련 공연 및 전시

4.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축제

제9조(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축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축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2. 축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3. 구민의 참여확대를 통한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 고취에 관한 사항

4. 축제 명칭과 그 내용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항

제10조(축제위원회의 구성 등) ① 축제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축제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축제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축제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장에서 “축제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문화예술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소속 의원 2명

나. 문화·예술·관광·축제분야에 조예가 깊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축제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축제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축제위원의 임기) ① 축제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축제위원장 등의 직무) ① 축제위원장은 축제위원회를 대표하고 축제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축제위원장을 보좌하고 축제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다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축제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다할 수 없을 때에는 축제위원 중 연장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축제위원회의 운영) ① 축제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축제위원장이 소집한다.

1. 구청장의 개최 요구가 있을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축제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②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과 일시, 장소 등을 서면 또는 구술로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축제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축제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회의에 참석한 축제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축제의 위탁) ① 구청장은 축제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사업, 축제전문기관, 관련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단체에게 그 기획·운영·집행 등을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축제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축제위원회를 보조사업자로하여 그 기획·운영·집행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사업비의 지원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축제위원회를 보조사업자로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축제 개최에 따른 소요경비
2. 축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8조(행정 협조 등) 구청장은 축제와 관련하여 축제위원회에서 인력 및 행사

제반사항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연수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

제19조(연수문화재단의 설립 등)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재단은 「민법」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대상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3. 생활문화 활성화 및 활동 지원
4. 지역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지역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5. 공공 문화시설 및 생활문화시설의 운영·관리
6. 지역문화예술교육 개발 및 지원
7.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8.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9.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문화산업 활성화

10. 국내외 문화예술 관련 공모사업의 참여

11.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제21조(기본재산의 조성)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재단의 기본재산은 구 출연금, 기부금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22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연금

5. 조직 및 정원

6. 이사·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의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수행에 관한 사항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승인사항을 지체 없이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재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③ 이사는 선임직 이사와 당연직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재단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의 방식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 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임원의 임면, 이사회 의사결정 방법,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24조(이사회)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5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하며,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6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재단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에 따라 재단설립비용 및 운영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8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과 결산서를 지체 없이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31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에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제32조(보고·검사·감사) ① 구청장 및 구의회는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검사·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구청장 및 구의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3조(상호파견) 대표이사는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구청장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재단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

제34조(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

4. 그 밖의 수입금

제36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을 통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목적에 사용한다.

1.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전통문화의 보존·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3.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4.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목적으로 구가 설립한 법인으로의 출연

5. 그 밖에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38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계획과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제4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예술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기금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문화예술업무 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의원 1명

나.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

다.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라. 그 밖에 기금의 운용·심의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4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다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다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4조(기금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기금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45조(수당 및 여비) 회의에 참석한 기금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년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7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문화예술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문화예술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8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구청장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생활문화시설 및 예술창작공간의 설치 및 운영

제49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주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문화시설 및 예술창작공간(이하 “생활문화시설 및 예술창작공간”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생활문화시설 및 예술창작공간은 구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생활문화시설 및 예술창작공간은 별표 1과 같다.

제50조(기능) ①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생활문화동호회 및 단체의 육성·지원
2.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및 기자재 대여
3. 생활문화동호회 및 단체의 대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지원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예술창작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의 예술창작 활동 및 전시 공간 지원
2. 문화예술교육 및 체험활동 지원
3. 국내외 문화예술교류 및 네트워크 활동 지원
4. 예술창작공간 시설 및 부속 시설물의 대여
5. 그 밖에 예술창작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51조(주민 참여 및 이용)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시설 및 예술창작공간이 제50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하며, 주민은 생활문화시설 및 예술창작공간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주민은 생활문화시설 및 예술창작공간의 일부 시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2조(관리·운영의 위탁 및 위탁 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시설 및 예술창작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문화시설 및 예술창작공간의 위탁운영에 따른 계약 위반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3조(사용허가·취소·제한)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시설 및 예술창작공간을 운영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단체나 법인 등에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나 법인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단체나 법인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허가 받은 생활문화시설 및 예술창작공간을 제3자에게 사용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2항을 위반한 경우

2. 허가받은 생활문화시설 및 예술창작공간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3. 구청장의 승인 없이 허가 받은 생활문화시설 및 예술창작공간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54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④ 생활문화시설 및 예술창작공간의 사용 제한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거 및 원상복구, 변상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생활문화시설 및 예술창작공간을 점유한 경우

2. 구청장의 승인 없이 원래 상태를 변경하거나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3. 생활문화시설 및 예술창작공간의 장비 및 설비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제54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다른 조례에 사용료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에게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의 감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제9조를 준용하며, 감면을 받고자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의 반환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제10조를 준용한다.

제6장 보칙

제55조(포상) 구청장은 지역문화의 진흥에 기여한 사람,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5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수문화재단기금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연수문화재단기금의 모든 권리·의무는 제34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승계한다.

【붙임2】「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현행)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　　제정) 2019.09.18 조례 제1152호
(일부개정) 2020.10.19 조례 제1152-3호
(일부개정) 2021.04.12 조례 제1348호
(일부개정) 2022.03.11 조례 제142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적 권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문화도시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문화를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생활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문화를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5. “생활문화시설”이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생활문화동호회”란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7. “예술창작공간”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 4. 12.>

제3조(책무) ①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정책수립 및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구민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1항의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1항의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역문화의 진흥

제6조(지역 문화예술의 진흥) 구청장은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기반시설의 조성 및 확충
2. 문화예술인·단체 지원 및 육성

3.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4. 문화유산·지역역사·전통문화의 보전 및 활용

5. 국내외 지역문화 교류 활성화

6.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제7조(생활문화 활성화) ①구청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구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생활문화동호회 및 단체의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축제의 육성 및 지원) ①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고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연수구 축제를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2.>

②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축제를 개최하는 경우 그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축제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행사 결과물, 기상 대비 물품 및 교통수단의 제공

2. 축제에 필요한 출연진 및 운영자 등의 홍보활동, 공동연수행사, 학술행사 및 그 밖의 관련 행사 진행 시 소요되는 경비의 제공

제8조의2(포상) 구청장은 지역문화의 진흥에 기여한 사람,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 3. 11.]

제3장 연수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

제9조(연수문화재단의 설립 등) ①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2.>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재단은 「민법」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목 개정 2021. 4. 12.]

제10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대상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3. 생활문화 활성화 및 활동 지원
4. 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5. 공공 문화시설 및 생활문화시설의 운영·관리
6. 문화예술교육 개발 및 지원
7.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8.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9.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10.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문화산업 활성화

1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운용

12.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제12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연수문화재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1. 4. 12.>

② 기본재산은 기금, 구 출연금, 기부금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13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재단 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4조(기금의 조성) ①적립기금은 구의 출연금, 기부금, 재단 사업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조성한다.

②운용기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보조금, 기본재산 운용수입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조성한다.

제15조(기금의 용도) ①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운용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단 운영비

2. 제11조에 따른 재단의 사업수행비

제16조(정관) ①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연금

5. 조직 및 정원

6. 이사·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의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수행에 관한 사항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승인사항을 지체없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0.10.19.>

제17조(임원) ①재단에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재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③ 이사는 선임직 이사와 당연직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재단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의 방식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10.19.>

④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 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0.10.19., 2022. 3. 11.>

⑤그 밖에 임원의 임면, 이사회 의사결정 방법,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0.10.19.>

⑥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0.10.19.>

제18조(이사회)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9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제20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재단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에 따라 재단설립비용 및 운영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2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과 결산서를 지체없이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0.10.19.>

제24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25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에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제26조(보고·검사·감사) ① 구청장 및 구의회는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검사·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0.19.>

②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항 신설 2020.10.19.>

③구청장 및 구의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항 신설 2020.10.19.>

제27조(공무원의 파견) 대표이사는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생활문화시설 및 예술창작공간의 설치 및 운영

제28조(설치 및 운영) ①구청장은 주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문화시설 및 예술창작공간(이하 “생활문화시설 및 예술창작공간”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2.>

② 생활문화시설 및 예술창작공간은 구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 4. 12.>

③ 생활문화시설 및 예술창작공간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1. 4. 12.>

제29조(기능) ①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 4. 12.>

1. 생활문화동호회 및 단체의 육성·지원
2.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및 기자재 대여

3. 생활문화동호회 및 단체의 대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지원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예술창작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21. 4. 12.>

1. 입주작가의 예술창작 활동 지원

2. 문화예술교육 및 체험활동 지원

3. 국내외 문화예술교류 및 네트워크 활동 지원

4. 예술창작공간 시설 및 부속 시설물의 대여

5. 그 밖에 예술창작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30조(주민 참여 및 이용) ①구청장은 생활문화시설 및 예술창작공간이 제29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하며, 주민은 생활문화시설 및 예술창작공간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2.>

②주민은 생활문화시설 및 예술창작공간의 일부 시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2.>

③구청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1조(관리·운영의 위탁 및 위탁 계약의 해지) ①구청장은 생활문화시설 및 예술창작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2.>

②구청장은 생활문화시설 및 예술창작공간의 위탁운영에 따른 계약 위반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2.>

제32조(사용허가·취소·제한)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시설 및 예술창작공간을 운영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단체나 법인 등에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단체나 법인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단체나 법인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허가 받은 생활문화시설 및 예술창작공간을 제3자에게 사용·수익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2항을 위반한 경우
2. 허가받은 생활문화시설 및 예술창작공간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3. 구청장의 승인 없이 허가 받은 생활문화시설 및 예술창작공간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33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④ 생활문화시설 및 예술창작공간의 사용 제한은「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거 및 원상복구, 변상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생활문화시설 및 예술창작공간을 점유한 경우

2. 구청장의 승인 없이 원래 상태를 변경하거나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3. 생활문화시설 및 예술창작공간의 장비 및 설비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전문 개정 2021. 4. 12.]

제33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다른 조례에 사용료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에게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의 감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제9조를 준용하며, 감면을 받고자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의 반환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제10조를 준용한다.

[전문 개정 2021. 4. 12.]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9.9.18. 조례 제11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②재단설립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재단 직원채용 등 필요한 행정을 한 경우에는 재단 이사장이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문화예술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제12조에 따른 연수구문화재단기금으로 승계한다. 다만, 재단이 설립·운

영될 때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문화예술진흥위원회 및 축제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문화예술진흥위원회 및 축제위원회의 존속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각 위원회의 존속기간 동안 위원회 운영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예술진흥조례」는 폐지한다.

②「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20.10.19. 조례 제11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348호, 2021. 4.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의 적용례) 제33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료를 징수, 부과, 반환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이미 부과하였으나 아직 납부하지 않은 사용료는 이 조례에 따라 부과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재단 및 기금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연수구문화재단은 개정규정에 따른 연수문화재단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면된 연수구문화재단의 이사와 감사 및 직원은 개정규정에 따라 연수문화재단의 이사와 감사 및 직원으로 임면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연수구문화재단기금은 개정규정에 따른 연수문화재단기금으로 본다.

제4조(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

탁 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 취소, 제한을 받은 사용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 취소, 제한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1424호, 2022. 3.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임기 만료 후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한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선임직 이사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연임된 것으로 본다.